

검찰근무 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검찰근무 규칙」의 개정) 검찰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령명 “검찰근무 규칙”을 “공소청근무 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검찰청법 제11조”를 “공소청법 제58조”로,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수사지휘”를 “사법통제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검찰공무원”을 “공소청공무원”으로,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“대검찰청·고등검찰청·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(이하 “지청”이라 한다)”을 “공소청·광역공소청·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(이하 “지청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, “상급검찰청”을 “상급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, 제3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, “상급검찰청”을 “상급공소청”으로, 제4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, “고등검찰청 검사장”을 “광역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, “상급검찰청”을 “상급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, “상급검찰청”을 모두 “상급공소청”으

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, “검찰사무”를 “검사사무”로 하고,
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, 제1호 중 “대검찰청”을
“공소청”으로, 제2호 중 “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”을 “광역공소청·
지방공소청 및 지청”으로, 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수사지휘 당번검사)”를 “(사법통제 당번검사)”로 하
고, 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, “검찰사무”를 “검사사무”, “수사지
휘”를 “사법통제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수사지휘”를 모두 “사법통제”로,
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수사지휘”를 모두 “사법통
제”로 하고,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. “수사지휘”를 “사법통제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)”를 “(사법통제 당직검사
의 지정)”으로 하고, “수사지휘”를 “사법통제”,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
청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, “수사지휘”를 “사법통제”로
한다.

제13조의 제목을 “(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)”을 “공소청의 장의 출장
등)”으로 하고, 제1항·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소청”으로, 제3항
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, 제4항 중 “검찰청”을 모두 “공
소청”으로 한다.

검찰근무 규칙 일부개정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검찰근무 규칙	공소청근무 규칙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검찰청법</u>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검찰청</u> 의 사무감사·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공소청법</u> 제58조-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<u>사법통제</u> ----- ----- ---.
제2조(정의) (생략) 1. “ <u>검찰공무원</u> ”이라 함은 각급 <u>검찰청</u> 에 근무하는 검사 및 <u>검찰청</u>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. 2. “ <u>검찰청</u> ”이라 함은 <u>대검찰청</u> · <u>고등검찰청</u> · <u>지방검찰청</u> 및 <u>지방검찰청지청</u> (이하 “지청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(현행과 같음) 1. “ <u>공소청 공무원</u> ”----- <u>공소청</u> ----- <u>공소청</u>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. 2. “ <u>공소청</u> ”이라 함은 <u>공소청</u> · <u>광역공소청</u> · <u>지방공소청</u> 및 <u>지방공소청지청</u> ----- -----.
제3조(사무감사) <u>검찰청</u> 의 장(지청의 장을 제외한다)은 그 관할에 속하는 <u>검찰청</u> 의 사무를 연 1회 이상 지도·감사하고, 그 결과를 상급 <u>검찰청</u> 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제3조(사무감사)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.
제4조(직무의 대리) ① <u>검찰청</u> 의	제4조(직무의 대리) ① <u>공소청</u> ---

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의 대리 또는 그 해제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,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직무대리의 기간이 7일이내 이거나 특정사건 또는 특정업무의 수행만을 위한 직무대리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장은 미리 관할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미도착보고) 검사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 임명 또

-----공소청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공소청-----

-----공소청-----.

④-----

-----공소청-----
-----광역공소청장-----
-----.

제5조(미도착보고) -----

는 전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
근무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
소속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
이 검사 및 5급 이상의 일반직
공무원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
에게, 6급 및 7급의 일반직공무
원에 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상
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보고해야
한다.

제6조(보고체계) 검찰청의 장이
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각종 보고
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
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검
찰청의 장을 거쳐서 하여야 한
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
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
보고한 후 즉시 상급검찰청의
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.

제7조(사무대결) ①검찰청의 장에
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 차장검
사(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
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)가,
차장검사(차장검사가 없는 지청
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
검사)에게 사고가 있는 때에는
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가

-----공소청-----

-----공소청-----

제6조(보고체계) 공소청-----

-----공
소청-----

-----공소청-----
-----.

제7조(사무대결) ①공소청-----

-----검사사무-----.

② 공소청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대결의 예외) -----

제9조(위임전결) ①공소청-----

1. 공소청-----

차장검사·부장·사무국장·과장·담당관 또는 민원사무담당 공무원

2. 대검찰청외의 각급 검찰청의 경우

차장검사·부장검사·검사·사무국장·과장 또는 민원사무담당 공무원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.

제10조(수사지휘 당번검사) ①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구속영장신청 및 변사체처리지휘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둔다.

②정상근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,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된 때부터 오후 11시까지 청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. 다만,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다.

2. 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청-----

②-----
-----공소청-----
-----.

제10조(사법통제-----) ①--

--공소청-----

-----검사사무
-----사법통제
-----.

②-----사법통제-----

-----사법통제-----

-----공소청-----
-----.

③수사지휘 당번검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근무하여야 한다.

④검찰청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수사지휘 당번검사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)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지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 또는 검찰청의 장이 지정하는 검사가 관장한다.

제12조(특근명령) 이 규칙에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각급검찰청의, 지방검찰청의 장은 소속검찰청 또는 지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인원과 근무시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제13조(검찰청의 장의 출장 등)

①검찰청의 장이 국내출장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사법통제-----

-----.

④공소청-----
-----사법통제-----

-----.

제11조(사법통제-----
-) 사법통제-----
-----공소청-----
-----공소청-----
-----.

제12조(특근명령) -----
-----공소청의,
지방공소청장-----공소청
-----사법통제-----

-----.

제13조(공소청의 장의 출장 등)

①공소청-----

-----공소청-----
-----.

②검찰청의 장(지청의 장을 제외한다)이 휴가, 국외출장 또는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검찰총장 및 바로 윗 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지청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법무부장관 또는 상급검찰청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근무지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.

②공소청-----

-----공소청-----
-----.

③-----

-----공소청-----
-----.

④-----공소청

-----공소청-----

-----.